

# 은행에 납입한 사립학교의 등록금에 대한 압류의 허용 여부

양 참 수 /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지난 3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 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등록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글은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의 논점들을 살펴 보고,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

## 1. 서

1. 대 법원은 1998년 3월 16일에 행하여진 결정(사건번호: 97마966, 967호)에서 사립 대학교의 회계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다(그 결정의 전문은 법원행정처에서 간행하는 『판례공보』 1998년도 상반기, 1126면 이하에 수록되어 있다).

판단내용을 요약하여 말하자면, 사립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이상을 합하여 「등록금」이라고 하자)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등록금은 채권자들의 차지가 되고, 더 이상 학교의 운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2. 이 결정에 대하여 「교수신문」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을 상대로 채권단이 마음먹기 따라 대학등록금이 압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대학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 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1998년

6월 15일자 2면). 여기서 말하는 「큰 파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 글은 일차적으로 이번의 대법원 결정의 내용을 법에 밝지 않은 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여 가능한 한 위 결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계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당황하거나 감정적이 되게 함이 없이 차분하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 다른 근거에서 제기되는 공적 요청이 서로 대립하여 동시에 모두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법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 고려에 기하여 적정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도 이 비전문적인 글을 쓰는 부차적 이유이다.

3. 이하에서는 우선 앞서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다루어진 논점들을 살펴본다(2.). 나아가 이 대법원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하여 극히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3.). 그리고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본다. 이를 통하여 여기서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법규정상의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이다(4.). 또한 그 대법원결정이 판시한 바는 이미 대법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사건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그 전에도 반복하여 행하여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하여 볼 때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이하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른 대응방도는 없는지를 음미하여 보기로 한다(6.).

## 2. 대법원결정의 사실관계와 쟁점

이번의 대법원결정의 사실관계는 오히려 단순하다.

B학교법인은 甲 대학교 그리고 그 외에 고등학교·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법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그 채권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 확정판결을 가지고 B 학교법인이 총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 예금은 그 은행의 甲 대학교 출장소에 행하여진 것이다)<sup>1)</sup>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의 명령을 얻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예금의 상당 부분은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이었다.

그러자 B 학교법인은, 그러한 등록금은

1) 실제 이 예금은 B 학교법인의 명의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甲 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명의로 행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A가 B 학교법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인 자신의 명의로 아니라 그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명의로 예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B 학교법인이 각급 학교 명의로 된 예금에 대한 권리자인가에 달려 있는 것인데,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 글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부칠 수 없는 것인데도 법원이 이를 허용하여 압류 및 추심의 명령을 발한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여 불복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은 모두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당연히 채권의 만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등록금 같은 것이야말로 바로 거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 3. 채권의 강제적 실현과 압류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든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든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의무를 채무라고 하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과 채무, 또 채권자와 채무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대립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그 실현이 일차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채무의 내용(가령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이 이미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있지는 않다. 말하자면 채권자가 채권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은 장차 채무자가 이를 실현하여 줌으로써 비로소 채권자에게 속하게 되며 또 그로써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된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 또는/및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의 힘을 빌어 강제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채권을 그와 같이 강제적으로 만족시키는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이다(강제집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즉 금전채권에 관한 것과 그 이외의 채권에 관한 것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전자이다.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대체로 채무자가 가지는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그 중에서 개별적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것(즉 환가절차)은 통상은 경매나 입찰에 의하여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행하여진다.

그런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개별적 재산이 부동산이나 동산 등이 아니고 특히 금전채권인 경우에는<sup>2)</sup>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추심명령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강제집행을 하고자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B 학교법인의 「예금」은 그 법적 성질이 B 학교법인이 충북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이다.

하는 채권자(이를 집행채권자라고 한다)에게 채무자가 가지는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만을 주는 것이다. 그 명령을 받으면 집행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필요하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또 채무자로부터 채권금을 유효하게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부명령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 경우는 집행을 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로 아예 그 귀속이 변하게 되고, 그 대신에 채무자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집행절차에 앞서서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압류이다. 그 중에서 채무자의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이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기타 채무의 운명이 변경되는 무슨 처분(예를 들면 상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집행채권자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B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A가 법원에 문제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것이 발하여진 것은, 바로 위와 같이 자신의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B 학교법인이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강제집행을 행한 것이다.

3.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강제이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뒤집어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총체적으로 채권 만족의 담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실로 핵심적 의미가 있는 법의 원칙으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계약과 같은 장래의 이행약속이 이 사회에서 모든 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의 실현이 당사자의 재산 전체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사람들은 재화를 바로바로 서로 바꾸는 물물교환거래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채권 만족의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의하여 채무자의 생존 또는 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동산 중에서 의복·침구, 식료품·연료, 농가의 농기구·비료·종자, 인장·간판·문패, 안경·보청기·의수족, 교과서·학습 도구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고, 채권 중에서 봉급이나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인격이나 명예 또는 정신활동에 주로 관련되는 것이로되 재산적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가령 혼장, 위패·영정, 족보·사진첩 같은 것을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제532조, 제579조 참조). 그리하여 채권자라도 이것을 압류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법률은 채무자가 가지는 재산 중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재해로 인한 보상청구권 또는 보험급여

청구권(근로기준법 제89조, 선원법 제124조),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법 청구권(국가배상법 제4조),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2조), 연금을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4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연금법 제40조) 등이 그러하다. 이들 규정이 주로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를 도모하거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적 권리에 집중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바로 학교법인의 예금 중 등록금도 이와 같이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부칠 수 없는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4.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요하며, 또 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압류의 배제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이라는 중대한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이라는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경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는 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 전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앞서 본 대로 압류금지를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인데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해석상의 요청이 여기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집달관과 같이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실무자에게 그 경계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도 제시되곤 한다.

#### 4. 등록금의 학교법인

##### 회계상의 지위와 압류 금지

1. 우선 사립학교법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이 사건 예금이 여기서 「기본재산」(제1항의 경우) 또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나아가 이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에 의한 압류까지도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를 논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재산 중 어느것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과 같은 등록금이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 위 법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가리키는 것인데, 역시 이 사건 예금은 거기에 열거된 항목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예금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위 법 제28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이

상, 그것만으로 「매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는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28조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 다른 한편 문제의 예금은 B 학교법인 이름으로 된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甲 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이름으로 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sup>3)</sup> 그것은 각급 사립학교나 사립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법은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고 부르기로 한다)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고 부르기로 한다)를 구분하여 놓고, 후자의 학교회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회계는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고 해서(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학교회계에 대하여는 통상 「재단」이라고 불러주는 법인측의 관여를 제한하고 학교의

장에게 편성과 집행의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다.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누어지는데(동조 제2항 참조), 이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제29조 제6항이다.<sup>4)</sup>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등록금은 바로 이러한 교비회계에 속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러한 교비회계를 지출하는 것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학생의 장학금·교육지도비·보건체육비나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용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sup>5)</sup>

이러한 규정들을 얼핏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학교법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위 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다.

3) 소위 금융실명제에 관한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각급 학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그에 의하여 법인과는 별도로 학교 자체를 예금명의자로 하여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甲 대학교나 기타 단위 학교는 이에 의하여 각급 학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4)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 의하면, 이 규정에 위반한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 그 외에,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교육부장관령)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제6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제21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 5. 대법원의 종전 재판례

1. 그런데 대법원은 그 전에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들에 대하여 자신의 태도를 밝힌 바 있다.

우선 벌써 25년 가까이 전에 나온 대법원 1974년 7월 16일 선고 73다1741판결(법원공보 496호, 7986면)은,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 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유용함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해 학교법인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하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 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학교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확정판결을 말한다]로써 학교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하고 할 수 없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의 4. 2에서 본 규정들은 학교법인이나 그 운영의 학교가 자신의 재산과 회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인 것이지, 그러한 규칙이 있다고 하여 학교법인이나 학교가 아닌 제3자, 특히 학교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학교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의 강제적 만족을 위하여 강제집행에 부치지 못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어느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1971년도 무시험진학지원자 입학등록금에 치금의 지급채권”이 압류되었던 것이므로, 이번에 새로 나온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 그 후 대법원 1987년 3월 24일 선고 86다카2389판결(법원공보 800호, 725면)은, 학교법인에 대한 퇴직금청구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학교법인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이 예금채권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동법 제29조는 제3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 대법원 1991년 5월 20일 고지 91마229결정(법원공보 901호, 1894면)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 명의로 개설되어 총장이 운용·집행하는 예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고, 나아가 대법원 1996년 12월 24일 고지 96마1302등 결정(판례공보 97상, 528면)도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다.

3. 이렇게 보면 이번에 나온 대법원결정은 별달리 새로운 점이 없는 것이며, 종전부터 해 오던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대한 해석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대로 「교수신문」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을 상대로 채권단이 마음먹기 따라 대학등록금이 압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대학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 주고 있다”는 보도는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 6.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가와 법적 대응

1.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가능하다.

즉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수입금을 학교교

육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의 지출자금마저도 부족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학교교육업무가 좌탈되거나 마비될 우려가 있다.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제2항과 제6항의 취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비회계의 수입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세출사항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하급심판결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년 4월 7일 선고 71가310판결(판례월보 11호, 62면); 서울고등법원 1972년 9월 15일 선고 72나1186판결(판례월보 26호, 45면); 앞의 5. 1에서 본 대법원 1974년 7월 16일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73년 10월 4일 선고 73나882판결 등이 있고, 그러한 취지의 견해도 없지 않다.<sup>6)</sup>

2. 그러나 역시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이나 제6항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학교 자체의 재무회계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학교의 재정(교비회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또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도 교비회계상의 세입을 지출할 항목을 정함으로써 학교회계의 편성·집행을 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항목에

의 세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회계운영에 대한 규정을 들어, 그와는 무관하며 또 학교법인 내부의 회계구분을 알 수도 없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그것을 학교교육의 건전한 운영에 돌리고자 하여 마련된 규정은 바로 앞의 4. 1에서 본 사립학교법 제28조이다. 이 규정은 그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학교법인의 재산처분이나 그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정하는 「기본재산」이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속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등록금과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정하여진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동법 제29조나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21조 제2항 등을 들어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규정들이 압류금지도 의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의 3. 4에서 말한 대로 보다 명확하게 이를 규정하였어야 했을 것이다.<sup>7)</sup>

3.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압류의 대상이 금융기관에 행하여진 예금이고 그 중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B 학교법인의 다른 세입금도 함께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논할 수

6) 李俊相, 「금융판례연구 1966~1972」(1973), 75면 이하; 黃永穆,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35집(1987), 394면 등 참조.

7)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없으나, 앞의 5. 2에서 본 대법원 1996년 12월 24일 결정은 이와 관련하여, 비록 채무자의 어떠한 채권이 압류금지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목적물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전의 성격이 압류금지된 목적물인지 아닌지, 두 가지 금전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액이 얼마인지를 가려 낼 수 없으므로, 신속한 집행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확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압류금지된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 판단은 수긍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설사 등록금 그 자체는 위 규정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그것이 다른 금전과 합하여 금융기관에 예입된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은 그러한 예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

4. 사정에 따라서 등록금 또는 그것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의 예금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이 당장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은 1990년의 개정에서 제533조를 수정하고, 또한 제579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상의 형평을 달성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시험하기에 꼭 알맞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